

한남대학교는 케이프투자증권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과 신의·성실로 상호 협조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양 기관은 공동 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남대학교와 케이프투자증권의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,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, 비대면 혁신·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.

1.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교육훈련 및 컨설팅
3.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 연구기반 조성 및 공동 실행
4. 현장실습, 인턴십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 교류 협력
5.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사항

제3조(신의성실)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.

제4조(협약기간 및 해지) ①양 기관은 제2조 협력사항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양 기관은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명기해 해지일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 ①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 ②협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비용부담)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수행기관 간 상호협의로 정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이 협약이 기간 만료,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.

제8조(법적구속력) 이 협약의 제7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아니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당사자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행한다.

이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월 2일

한 남 대 학 교
경 상 대 학
학 장 정 충 영

케 이 프 투 자 증 권
리 서 치 본 부
상 무 김 유 겸




